

예 산 총 칙

2007년도 [2 회추경]

* 제1조 :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290,321,735	8,709,652
일 반 회 계	258,605,100	7,758,153
특 별 회 계	31,716,635	951,499
기 타 특 별 회 계	31,716,635	951,499
의료보호기금	1,123,299	33,69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915,290	27,459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	16,600	498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	6,064,877	181,946
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	1,590,255	47,708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	13,247,573	397,427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978,251	29,348
교통사업	6,866,921	206,008
주택사업	12,083	362
기반시설	901,486	27,045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200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4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5,745,336천원으로 한다

* 제5조 : 다음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인건비, 반환금기타, 지방채상환 원·리금

* 제6조 :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